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81,480,064	23,444,402
일반회계	678,320,002	20,349,600
특별회계	103,160,062	3,094,802
공기업특별회계	50,102,499	1,503,075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0,102,499	1,503,075
기타특별회계	53,057,563	1,591,72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830,146	384,904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3,292,543	98,776
수질개선특별회계	40,000	1,200
도시개발특별회계	8,638,001	259,1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60,741	127,822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282,147	98,4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583,523	17,506
주택사업특별회계	113,628	3,409
농공단지특별회계	7,611,096	228,333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732,489	51,97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792,139	113,764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30,452	9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850,658	205,5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54,98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확정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가 있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얻어 간주 처리할 수 있다.